

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1988년부터 운영해 오던 「구미시 근로자 대형 구판장」이 인근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입점으로 더 이상의 존치 유명무실
- 나. 「구미시 근로자 대형 구판장」을 「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」로 전환 운영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가.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(안 제2조)
- 나.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사업(안 제3조)
- 다.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사용자 범위(안 제4조)
- 라.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(안 제5조)
- 마.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위탁(안 제6조)
- 바.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지도 감독(안 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
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구미시 산호대로 185(공단동)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제1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근로자 노동법률상담,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 사업
2. 근로자 쉼터, 휴게실 등 편의사업
3. 그 밖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사용자의 범위)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미시민
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제5조(운영) 센터의 운영은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

제6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및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운영지원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구미시 관내 노동단체 및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서류 및 물품 등을 제출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「구미시근로자대형 구관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는 폐지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
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 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

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□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"근로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·사업주·노동조합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·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3.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·컨설팅에 관한 사항
4. 사업장의 고용·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
5.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
6. 노사협력 우수기관·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
7.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·캠페인에 관한 사항
8.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

제9조(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)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·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·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·보조의 대상·방법·절차 및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「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」

제3조(지원대상 사업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
2.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
3.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,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
4.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
5.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
6.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
7. 중소기업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
8.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,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,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·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제7호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노사협력 증진, 노사관계 발전 및 작업장혁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고용유지·창출을 위한 생산적 교섭 지원
2.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작업장혁신 추진
3. 노사관계 관련 교육, 연수, 세미나 활동

4. 노사 갈등관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5. 그 밖에 노사협력,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일자리
창출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노동법률상담, 노동법률상담, 쉼터, 휴게실 운영 경비가 연 평균 1억원 미만이 예상 되나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노동복지과 지방행정주사 권동철 (480-6201)

소관 실·과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담 당 관	최 현 도
	담 당	권 동 철
	담 당 자	윤 정 호 (480-6202)